

##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

신청인	상호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이메일주소: )
	소재지(사업장)			(전화번호: ) (팩스번호: )
확인사항	화학물질명			
	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물 질 식별번호)			
	등록 여부	[ ] 등록(등록통지일 : ) [ ] 미등록		
	등록형태	[ ] 0.1톤 이상 1톤 미만 [ ] 1톤 이상 10톤 미만 [ ] 10톤 이상 100톤 미만 [ ] 100톤 이상 1,000톤 미만 [ ] 1,000톤 이상 [ ] 고분자화합물 [ ] 나노물질 [ ] 현장분리중간체 [ ] 수송분리중간체 [ ]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[ ]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화학물 질 ( [ ] 0.01톤 미만 [ ] 0.01톤 이상 0.1톤 미만 [ ] 0.1톤 이상 1톤 미만)		
등록인	상호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이메일주소: )
	소재지(사업장)			(전화번호: )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가 문의한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직인